

[별지]

1.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(단위: 천분율(%))

사 업 종 류	요율	사 업 종 류	요율
<b>1. 광업</b>		<b>4. 건 설 업</b>	35
석탄광업 및 채석업	185	<b>5. 운수·창고·통신업</b>	
석회석·금속·비금속·기타광업	57	철도·항공·창고·운수관련서비스업	8
<b>2. 제조업</b>		육상 및 수상운수업	18
식품품 제조업	16	통신업	9
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	11	<b>6. 임 업</b>	58
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	20	<b>7. 어 업</b>	27
출판·인쇄·제본업	9	<b>8. 농 업</b>	20
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	13	<b>9. 기타의 사업</b>	
의약품·화장품·연탄·석유제품 제조업	7	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	8
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	13	기타의 각종사업	8
금속제련업	10	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	6
전기기계기구·정밀기구·전자제품 제조업	6	도소매·음식·숙박업	8
선박건조 및 수리업	24	부동산 및 임대업	7
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	12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	9
<b>3.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</b>	7	<b>0. 금융 및 보험업</b>	5
		* 해외파견자: 14/1,000	

2.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: 전 업종 0.6/1,000 동일

\*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정보공개법령정보-훈령·예규·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([www.comwel.or.kr](http://www.comwel.or.kr)) 사업 안내기입납부-보험료 신고 및 납부-보험료율에 게재